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5,661명”을 “15,760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4,881명”을 “4,980명”으로 한다

표1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16,369명”을 “16,468명”으로 하고, 동표의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4,881명”을 “4,980명”으로 한다.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16,019명”을 “16,118명”으로 하고, 동표의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4,881명”을 “4,98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보건복지국(보건위생과)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	1. 이·미용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1981.11.30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와 1981.12.1 이후 이·미용사 자격인정 전문대학 (또는 동등학력 인정자)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자중 졸업당시 주소가 타 시·도로 되어 있던 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나. 면허취소 및 면허의 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구 청 장

별표중 교통관리실(운수물류과)란의 제1호의 타목·파목·하목 및 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같은란같은호중 거목 및 러목과 같은표같은란 제18호·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표같은란의 제6호 내지 제17호는 이를 삭제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	1.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러.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18. 자동차 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 동법 제52조(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 청 장